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6. 2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6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5년 6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113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5. 6. 28)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김 종 선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문화행사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실시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및 공간 등)을 주민자치 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평가·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7항)

-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지급.(안 제8조)

-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경우, 강사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적극 반영토록 함.(안 제9조)

- 동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년도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 주민자치위원 위촉대상자에 복지시설 종사자 추가함.
(안 제17조제3항)

-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7조제8항)

-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기교육과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9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마포구 관할 24개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10.30 조례 제470호로 제정되고 2003.2.15 조례 제529호로 전문 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 안 제4조제1항에는 동사무소 이외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및 추진실적을 평가·시상할 수 있고,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제2항제1호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대상자에 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8항과 제9항을 신설하여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교육, 간담회, 박람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문화행사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교육, 간담회, 박람회, 선진지 견학 등은 현재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나 동 조례에 명문 규정이 없어 공직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어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의 주민자치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 조례에 근거규정을 정함으로써 자치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공간에 관한 설명을 규정한 소괄호안의 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및 공간 등에서 “공간”은 전문과 충복되는 자구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전완수 위원) :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 25명 외에 전문가 10을 증원하는 것인가?
-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구에 설치하는 것임.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선진지 견학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국내 타·시도에 운영이 잘되는 센터를 방문하는 것임.
- 질의요지(남두희 위원) : 주민자치과에서 예고없이 프로그램 진행 시간을 확인하여 센터가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직원이 불시에 점검을 하여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음.

5. 토론판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5. 6. 28.

제 안 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공간에 관한 설명을 하고자 배열한 소괄호안의 “공간”은 전문과 중복되는 자구이므로 삭제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제4조제1항 단서 규정 중 “공간(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및 공간 등)”을 “공간(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등)”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4조제1항 단서 규정 중 “공간(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및 공간 등)”을
“공간(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등)”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설치 등) ①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u>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및 공간 등</u>)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등) ①_____ _____ _____ _____ (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등)을 _____.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5. 6.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문화행사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실시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및 공간 등)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평가 ·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 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 개발, 협조 · 지원 등을 위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 ·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7항)
- 라.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지급(안 제8조)
- 마.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경우, 강사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적극 반영토록 함(안 제9조)
- 바. 동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년도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 사. 주민자치위원 위촉대상자에 복지시설 종사자 추가함.(안 제17조제3항)
- 아.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8항)
- 자.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기교육과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9항)

3. 근거법령

- (1)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첨조치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5. 04. 30 ~ 05. 2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05. 06. 07)
- 다.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간”을 “공간(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및 공간 등)”으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운영비”를 “운영비 및 시상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구청장은 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평가·시상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지역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경우, 강사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8월말”를 “10월말”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 “각급학교”를 “각급학교, 복지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⑨구청장은 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기교육과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p>제4조(설치 등) ①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제7조(운영) ①~④(생략) ⑤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4조(설치 등) ①공간(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및 공간 등) -----</p> <p>제7조(운영) ①~④(현행과 같음) ⑤운영비 및 시상금 -----</p>
	<p><신 설> ⑥구청장은 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평가·시상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지역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있다.</p>
	<p><신 설> ⑦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p>제8조(자원봉사자) ①, ② (생 략) <u><신 설></u></p>	<p>제8조(자원봉사자) ①, ②(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p>
<p>제9조(강사) ①, ② (생 략) <u><신 설></u></p>	<p>제9조(강사) ①, ②(현행과 같음) ③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경우, 강사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4조(보고) ①동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연도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보고) ①----- 10월 말 ----- ----- ----- -----</p>
<p>제17조(구성등) ①(생 략) ②(생 략)</p> <p>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p> <p>2. (생 략)</p> <p>③~⑦(생 략) <u><신 설></u></p> <p><u><신 설></u></p>	<p>제17조(구성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1. ----- 각급학교, 복지 시설, ----- ----- -----</p> <p>2. (현행과 같음)</p> <p>③~⑦(현행과 같음)</p> <p>⑧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⑨구청장은 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기교육과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p>